

건축사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9652호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국무총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전설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판서의 장이 작성하거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전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 도서를 말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가 목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작성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폐지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실시하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시험과목등)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과목 2. 제2차시험과목

- | | |
|---------|---------|
| 가. 건축구조 | 가. 건축계획 |
| 나. 건축시공 | 나. 건축설계 |
| 다. 건축법규 | |

②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설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전설부장관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법규 이외의 과목 및 제2차시험과목중 건축설계 이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제10조중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가 포함된 합동사무소(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를 제외한 건축사의 수가 2인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호 및 제3호의 임무를 행할 수 없다.

제35조 제1항 본문중 "법 제35조"를 "법 제5조"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3조·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대통령령 제9,183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중 "60일내" 및 동 부칙 제3항중 "30일내"를 각각 "2년내"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2급건축사로서 법 제14조의 자격이 있는 자가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혈액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